

의안번호	2212156
의 퇴 인	서영교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2.
추계번호	25F438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중소기업 등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등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시, 2026년 3.95억원, 2027년 3.95억원 등 2026~2027년까지 2년간 총 7.9억원(연평균 3.9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1.52억원(연평균 -0.76억원)
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0.98억원(연평균 -0.49억원)
 -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1.02억원(연평균 -0.51억원)
 -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1.51억원(연평균 -0.76억원)
 - 지역중소기업 지원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2.87억원(연평균 -1.44억원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59조제1항)	-0.76	-0.76	-1.52	-0.76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59조제2항)	-0.49	-0.49	-0.98	-0.49
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59조제3항)	-0.51	-0.51	-1.02	-0.51
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0조제1항)	-0.76	-0.76	-1.51	-0.76
지역중소기업 지원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0조제4항)	-1.44	-1.44	-2.87	-1.44
소 계	-3.95	-3.95	-7.90	-3.95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9조 제1항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)	○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－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2	안 제59조 제2항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)	○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 용기한 연장 －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3	안 제59조 제3항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)	○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 한 연장 －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4	안 제60조제1항 (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통시장(상인) 협동조합 또는 사업 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－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5	안 제60조제4항 (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지역중소기업 지원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－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59조 제1항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59조 제2항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)	○	
3	안 제59조 제3항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)	○	
4	안 제60조제1항 (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5	안 제60조제4항 (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에 통과되어 2026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(안 제59조제1항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0.76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(안 제59조제2항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자에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취득세 감면은 없을 것으로 가정
 - 재산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0.49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(안 제59조제3항)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0.4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재산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0.05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(안 제60조제1항)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0.76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(안 제60조제4항) 지역중소기업 지원목적 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0.06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- 재산세 감면은 2023년 감면액 1.3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－ 재산세 감면실적이 2021~2023년 3년간 연평균 12.1%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기는 하나, 2023년 취득한 부동산에 의해 증가세가 더 높을 것으로 보여 2023년 재산세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59조제1항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25% 감면

○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
- (감면실적) 2023년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없음

○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 1.81억원에서 2022년 0.46억원으로 감소하며 2023년 감면실적은 없음

[표 2]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감면실적	1.81	0.46	—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0.76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6년 0.76억원, 2027년 0.76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1.52억원(연평균 0.7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: 취득세, 2026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소계	-0.76	-0.76	-1.52	-0.76

나.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59조제2항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·재산세를 감면
 - 감면내용: 취득세 50% 및 재산세 50% 감면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- (감면실적) 2023년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취득세 감면실적은 없으며, 재산세 0.47억원 수준
 - 취득세는 2021~2023년간 감면실적 없음
 - 재산세의 경우 2021년 0.48억원에서 2022년 0.52억원으로 증가, 2023년 0.47억원으로 소폭 하락

[표 4]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소계	0.48	0.52	0.47
- 취득세	-	-	-
- 재산세	0.48	0.52	0.47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자에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취득세 감면은 없을 것으로 가정
 - 재산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0.49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6년 0.49억원, 2027년 0.49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0.98억원(연평균 0.4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: 지방세, 2026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소계	-0.49	-0.49	-0.98	-0.49
- 취득세	-	-	-	-
- 재산세	-0.49	-0.49	-0.98	-0.49

다.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(안 제59조제3항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·재산세를 감면
 - 감면내용: 취득세 50%, 재산세 3년간 50%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
- (감면실적) 2023년 기준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취득세 0.61억원, 재산세 0.06억원 수준
 -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 0.61억원에서 2022년 0.17억원으로 하락, 이후 2021년 수준을 회복하여 2023년 0.61억원 감면
 - 재산세의 경우 2021년 0.05억원에서 2022년 0.03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0.06억원으로 소폭 증가

[표 6] 협동화실천계획 사업자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소계	0.67	0.19	0.67
－ 취득세	0.62	0.17	0.61
－ 재산세	0.05	0.03	0.0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0.4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재산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0.05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 사업자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6년 0.51억원, 2027년 0.51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1.02억원(연평균 0.5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: 지방세, 2026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소계	-0.51	-0.51	-1.02	-0.51
- 취득세	-0.47	-0.47	-0.93	-0.47
- 재산세	-0.05	-0.05	-0.09	-0.05

라.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(안 제60조제1항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□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·가공·수주·판매·보관·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% 감면

○ 다만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75% 감면

○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
□ (감면실적) 2023년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취득세 0.04억원 수준

○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3년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 1.08억원과 2022년 1.15억원에서 하락한 0.04억원 감면

[표 8]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: 2021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감면실적	1.08	1.15	0.04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0.76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6년 0.76억원, 2027년 0.76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1.51억원(연평균 0.7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: 취득세, 2026~2027년

(단위: 억원)				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소계	-0.76	-0.76	-1.51	-0.76

라. 지역중소기업 지원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(안 제60조제4항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·산업기술·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에 대해 그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
 - 감면내용: 취득세 및 재산세 50%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
- (감면실적) 2023년 기준 지역중소기업 지원목적 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취득세 0.18억원, 재산세 1.37억원 수준

-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1년과 2022년은 감면실적이 없었으며, 2023년 0.18억원 감면
-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1년 1.09억원에서 2023년 1.37억원으로 증가

[표 10] 지역중소기업 지원목적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: 2021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
소계	1.10	1.17	1.56
- 취득세	-	-	0.18
- 재산세	1.09	1.17	1.37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- 지역중소기업 지원목적 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
 -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(2021~2023년)의 연평균 감면액 0.06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재산세 감면은 2023년 감면액 1.37억원이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재산세 감면실적이 2021~2023년 3년간 연평균 12.1%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기는 하나, 2023년 취득한 부동산에 의해 증가세가 더 높을 것으로 보여 2023년 재산세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지원목적 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할 경우, 지방세수는 2026년 1.44억원, 2027년 1.44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2.87억원(연평균 1.4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: 지방세, 2026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소계	-1.44	1.44	-2.87	-1.44
- 취득세	-0.06	-0.06	-0.12	-0.06
- 재산세	-1.37	-1.37	-2.75	-1.37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